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.

-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법령과 조례에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%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단서 조항은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%로 규정해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

-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서구 등은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,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,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.

-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대거 축소되었으나,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, 오피스텔, 고시원 등 고밀화가 진행되어 교통정체, 주차공간 부족,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주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-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어,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입니다.
- 지난 6월, 국회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범위를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- 이에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, 400%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가 마련되면,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
-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,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,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